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24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서삼석·조인철·임호선

이기헌 · 염태영 · 이용선

박수현 • 윤준병 • 전진숙

전재수 · 신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일반건 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 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 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나 아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건강검진을"을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 |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 |
| 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 | 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
| 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 | |
| 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 |
|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 |
| 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 |
|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 |
|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 |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 |
| 여야 한다. | 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
| | 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
| |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시하는 특 |
| | <u>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u> |
|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